

다자간 투자협상과 아국기업 대응방안

문재우 과장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

목 차

- I. 디지털 투자협상 추진배경 및 경위
- II. 디지털 투자협상의 개요
- III. 디지털 투자협상의 국내적 영향
- IV. 디지털 투자협상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 V. 진지·정보신입 분야에서의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본고는 지난 6월 13일~14일 본회에서 개최한
「전자산업 통상전략 포럼」중 일부 내용을 수록
한 것임

I. 다자간투자협정 (MAI)의 추진배경 및 경위

1. 다자간투자협정의 추진 배경

○ 최근 세계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기업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

— 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경쟁에 대응하여 기업의 모든 활동을 전세계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생산·유통·판매·연구개발 등 기업활동의 전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 세계화된 기업은 가장 낮은 비용으로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전세계적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 기업활동의 세계화는 개별 정부의 정책 및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를 요구

— 무역부문에 있어서는 GATT를 중심으로 자유화의 노력이 지속되어 UR의 타결 및 WTO의 출범을 통하여 일단락.

— 자문부문에 있어서는 국제투자를 규율하는 다자간규범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결집되지 못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OECD를

중심으로 투자에 대한 다자간규범인 다자간투자협정(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논의가 전개된 데는 아래와 같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① 80년대 이후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통일된 투자에 관한 다자간규범의 필요성이 증대.

② 다국적기업의 활동영역이 범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대되었으며,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국제적 차원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규범들을 정립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③ 기존 OECD의 투자관련 규범인 자본이동 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의 수지자유규약 및 내국민 우대규정 등이 국제투자를 포괄적으로 규율하지 못함에 따른 OECD의 새로운 규범정립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④ 미국은 자국의 공격적인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NAFTA투자협정 및 자국의 양자간투자협정을 다자체제로 확대하여 자국기업의 국제투자환경을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다.

2. 다자간투자협정의 추진 경위

(1) OECD에서의 추진경위

○ 1991, OECD 각료이사회는 당시의 OECD자문규범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지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와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의 거래위원회(CMIT)는 보다 광범위한 투자규정(WII : Wider Investment Instrument)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 1994, 이에 대한 보고서가 1994년 OECD 각료이사회에 제출되었으며, 동 보고서에서 양 위원회는 법적인 포속성을 갖고, 투자자유화·투자보호·분쟁해결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는 다자간투자협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1994년, OECD 각료이사회는 다자간투자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양 위원회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 양 위원회는 이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① 현 OECD 투자규범의 강화방안, ② 현 OECD 규범외의 신규자유화 방안, ③ 투자보호, ④ 분쟁해결절차, ⑤ 비회원국의 참여 및 제도적 문제의 5개 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로 작업반을 구성,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진행.

○ 1995. 5월, 제34차 OECD 각료이사회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의 개시가 선언.

- 1997년 각료이사회시까지
다자간투자협정 체결을 목표.
- 수준높은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
- OECD 회원국은 물론 비
회원국에게도 가입이 개방.

- 1995. 9월, MAI 협상그룹
이 구성되어 협상 진행
 - 협상그룹 산하에 3개의
초안작성그룹과 5개의 전문가그
룹을 통해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
 - 협상그룹 구성이후 통상
6주마다 한 번씩 회의가 개최되었
으며 1996년 말부터는 거의 매월
회의를 개최하면서 1997년 각료
이사회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1997. 5월 OECD 각료이사
회는 내년 각료이사회시까지 협상
을 타결토록 협상시한을 1년 연장.

(2) 우리나라의 MAI 협상 참여경위

- 1996. 8월, OECD 가입에
앞서 MAI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을 반장
으로 외무부, 통상산업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MAI대
책반」을 설치.
- 1996. 10월, 최초로 MAI
협상에 옵저버로 참가.

- 1996. 12월, 협상그룹에 정
회원자격으로 처음 참가.
 - 대책반 산하에 8개의 분
야별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이슈
별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및 대응
방안을 수립, 협상에 대응.
 - 1997. 3월, 국별유보안 제
출(30개 협상참가자 중 27번째)

II. 다자간투자협정의 개요

1. 다자간투자협정의 성격

- MAI는 기존의 OECD 투자
규범들의 자유화수준을 넘는 독립
협정(free-standing agreement)
로서 법을적 구속력을 가지며
가입을 위해서는 국회비준이 필요.
 - OECD 회원국의 지위와
MAI 가입은 형식상 별개의 문제
이나, OECD회원국의 경우 MAI
에 가입하지 않을 때에서는 여타
회원국들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
을 것으로 예상된다.

- MAI 협상그룹의 장은 OE
CD 회원국들과 비회원국중 남미,
아시아, 동유럽 등 일부국가가 가
입하여 창립멤버(founding mem
ber)가 약 35개국에 이를 것으로
전망.

2. 다자간투자협정의 특징

(1) 광범위한 투자의 정의 (broad definition of investment)

- MAI에서는 투자를 기업,
주식, 채권, 지적소유권, 계약에
따른 각종 청구권 등 유형·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정의(single, broad,
asset-based definition)함으
로써 기존의 어떠한 투자규범보다
도 포괄범위가 광범위.

(2) 높은 수준의 (state-of-the-art) 투자자유화

- MAI는 체약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와 최
혜국 대우를 구속적인 의무로서
규정.

- MAI의 내국민/최혜국대
우는 설립후단계(post-establish
ment) 뿐만 아니라 투자실행단계
(pre-establishment)의 자유화
도 보장.

- ※ 기존 OECD투자규범을
비롯한 어떠한 투자규범도 내국민
대우를 구속적인 일반적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또한, MAI에서는 양자간투
자협정 및 OECD규약에서 규정하
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

- 즉, ① 핵심인력의 자유
로운 이동 보장, ② 민영화시 외
국투자자의 참여보장, ③ 외국투
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 금지, ④ 독점기업의 외국투
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차별금지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논의중에 있다.

(3)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

○ MAI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설립후 및 설립전단계 모두에 적용되는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

○ 또한, MAI에서는 WTO가 규정하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절차도 두어 투자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3. 다른 협정과의 비교

(1) 양자간투자협정과의 비교

○ MAI와 양자간투자협정의 가장 큰 차이는 MAI의 경우 투자자유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 일반적으로 양자간투자협정은 투자후단계의 투자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투자자유화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투자보호에 있어서도 MAI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투자의 모든 단계에 적용하며 법률적 차별 및 사실상 차별을 모두 금지하여 투자보호가 더욱 두텁다고 할 수 있다.

(2) 기존 OECD 투자규범과의 비교

○ MAI가 기존 OECD규범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두어 의무이행의 강제력을 확보한 점.

○ 또한, MAI는 기존 OECD 투자규범인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 외법래 자유화 규약 (OECD 양대규약) 및 내국민대우 규정을 통합하고 투자자유화 및 보호수준을 확대

III. 다자간투자협정의 국내적 영향

1.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1) 경쟁의 촉진 및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자극

○ MAI는 국제투자에 있어서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투자제한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이를 통해 각종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률을 촉진하여 경제전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증대에 따른 글로벌화 촉진

○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우리나라로서는 MAI 가입이 국제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의 확대는 우리경제가 추구하는 글로벌화를 진척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3)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보호

○ MAI에 가입하는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MAI 체약국의 불합리한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어 우리기업이 외국기업과 동등한 경쟁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1996년 외국인투자는 32억불, 해외투자는 60억불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보다 해외투자가 약2배 수준

(4)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제고

○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를 제한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는 서비스 부문, 특히 생산자서비스부문의 낙후성.

MAI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자유화가 촉진되는 경우 이는 생산부문에 대한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의 전반적인 생산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우려되는 사항

(1) 경쟁력 취약 업종의 구조정 부담 및 고용불안 우려

○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과 경쟁하기에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서 자유화가 확대되는 경우 국내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2) 단기자본이동의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교란의 가능성

○ MAI는 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자본의 이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거시경제 교란요인의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교란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 현재 이와 관련하여 국제 수지위기 및 급격한 단기자본이동에 따른 거시경제 교란시 MAI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항이 논의중에 있다.

※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른 거시경제 교란에 대해서는 OECD가입시에 논란이 있었으나, 단기자본이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보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MAI에서 기준 OECD규범에 대한 유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IV. 다자문투자협정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처방안

※ 이 장의 대응방안은 구체적으로 MAI에 대한 대응방안이라 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글로벌경제에서의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이다.

1. 정부 및 기업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1) 정부의 역할 재정립

○ MAI는 각국정부가 정부의 역할과 경제정책의 지향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활동의 자유화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상품, 서비스, 자본, 기업의 이동이 자유로워 지면서 국가경제 또는 국가기업이라는 개념이 퇴색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정부의 경제정책은 최고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다수의 기업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자국민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변화된 경제환경에 적응토록 하며,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하여 건전한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MAI가 기업에게 주는 메시지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차이가 줄어들어 국내시장이나 외국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게 된다는 점이며, 이는 국내시장에서 차지해 온 국내기업의 기득권이 보호될 수 없다는 측면과 우리기업의 자유로운 활동범위가 전세계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측면을 모두 포함.

— 이에 따라 MAI 시대의 주역은 글로벌화된 다국적기업들이 될 것이며,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조류에 맞춰 다양한 세계화 전략 통해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할 것이 요구된다.

○ 이를 위해서는 유수의 선진 국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며, 기업내부의 비효율적인 경영구조를 타파하고 업종의 전문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대처방안

(1) 최고의 인프라 제공

○ 자본의 이동이 자유화되는 MAI시대에 있어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구분은 무의미해지며, 국내에서 생산, 구매,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기업이다.

○ 정부는 최고의 인프라를 제

공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당해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2) 기업의 세계화 지원을 위한 국제투자의 자유화

○ 경쟁의 국제화는 필연적으로 기업활동의 글로벌화와 국경을 초월한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는 국내기업이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과 상호이익에 따른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3) 인적자본 개발투자의 확대

○ 경제성장과 요소비용의 상승에 대응하여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이 절실하다.

— 고도의 인적자본을 형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투자와 현재의 왜곡된 교육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더우기, 인적자본의 형성은 국민들의 수준높은 생활여건 확보와 직결된 문제로서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4) 경쟁력 취약업종에 대한 단기적 개방유보 설정 및 지원

○ 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상기의 대응방안과 별도로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개방유보의 설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3. 기업의 대응방안

(1) 기업의 주력업종에 대한 전문화 강화

○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체제 내에서 우리기업이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각화된 재벌의 기업구조가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기술력을 향상하고, 공정의 혁신·혁신적인 제품개발·제품 차별화·품질향상 등을 도모

(3) 기업구조의 글로벌화

○ 정보화된 생산구조에 걸맞는 분권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 확립, 산업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인 기업문화 구축 등 글로벌화된 경제체제에 따라 기업구조도 글로벌화하여야 한다.

V. 전자·정보산업 분야에서의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1. 전자·정보산업의 특성 및 우리나라의 현황

(1) 전자·정보산업의 특성

○ 급속한 기술혁신과 짧은 제품수명 : 전자·정보산업의 기술혁신은 다른 분야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막대한 연구개발투자가 요구된다.

○ 가격인하 : 급격한 기술혁신과 기술의 표준화는 지속적인 가격인하를 유발

○ 자본집약성 : 전자·정보산업은 테스트, 품질관리, 자동화 설비 등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쟁의 비대칭이 존재

○ 외부경제에 따른 시장실패의 가능성 : 전자·정보산업은 자본 및 연구개발 집약산업으로서 투자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기술개발 자체가 어려운 반면,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기술의 외부유출로 인하여 산업적 이익을 최대화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

(2) 우리나라 전자·정보산업의 현황

○ 우리나라의 전자·정보산업은 '96년 총수출의 32%를 차지하여 주력수출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세계적으로도 세계4위의 생산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질적으로도 산업화 초

기단계인 '60년대 라디오의 조립 생산 수준에서부터 현재는 세계적 첨단전자기술을 개발하고 선진국의 주요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2. MAI시대에 있어 정부의 역할 – 전자·정보산업

○ 앞서 본 바와 같이 MAI시대는 정부의 역할이 이제까지의 보호주의적이고 개인적인 경제운용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점은 전자·정보산업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 다만, 전자·정보산업에 있어서는 그 산업적 특성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 정보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 전자·정보산업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 막대한 정보인프라의 조성이 요구되며, 이 분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 시행 및 연구인력 양성 : 개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로는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사업 강화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국제적 제휴를 위한 투자 자유화 : 전자·정보산업은 자본집약성이 높고 기술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기업간의 제휴는 필요불가결함.

따라서, 우리기업의 국제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자유화가 요구되며, MAI는

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MAI시대 기업의 대응방안 – 전자·정보산업

○ 국내업계에서 전자·정보산업은 상대적으로 글로벌화가 상당히 진전된 분야로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MAI시대에도 다른 업종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과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전문화, 연구개발의 확대, 기업구조의 글로벌화가 절실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전자·정보산업의 특성상 과감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